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48 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주호영·권영세·박준태

조지연 · 강선영 · 장동혁

김종양 · 정희용 · 이헌승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(改選)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조정위 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- 1.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 내에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
- 2.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 이후에 해당 위원회로 개선 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정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~	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	⑤
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	
선임하고, 조정위원장은 조정위	
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	
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	
이 의장에게 보고한다. <u><단서</u>	<u>다만,</u>
<u>신설></u>	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조정위원
	으로 선임할 수 없다.
<u><신 설></u>	1.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위
	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
	은 날부터 제2항에 따른 활동
	기한 내에 제1교섭단체에 속
	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u><신 설></u>	2.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가
	있은 날 이후에 해당 위원회
	로 개선된 경우
⑥ ~ ⑩ (생 략)	⑥ ~ ⑩ (현행과 같음)